

제5절 장애인 복지

1. 장애인 등록

○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기타
계	21,071	11,864	2,127	2,115	1,053	2,115	152	566	539	84	456
1급	1,843	418	289	62	289	600	78	37	32	2	36
2급	2,942	723	61	420	379	609	47	215	402	15	71
3급	3,720	1,714	128	416	385	524	27	314		65	147
4급	3,158	2,272	112	500		166			4	1	103
5급	4,279	3,364	156	416		142			101	1	99
6급	5,129	3,373	1,381	301		74					

2.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

가. 2009년 추진실적

1) 장애수당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급중증장애인(1급, 2급)에게는 매월 13만원, 경중장애인(3급~6급)에게는 매월 3만원, 차상위중증장애인에겐 매월 12만원, 차상위경중장애인에겐 매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월 평균 3,116명의 대상자에게 연간 2,535,000천원을 지원하였다.

2) 장애아동수당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수급중증장애아동(1급, 2급)에게는 매월 20만원, 경중장애아동(3급~6급)에게는 매월 10만원, 차상위 중증장애아동에게는 매월 15만원, 차상위 경중장애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의 장애아동수당 지급하여 월 평균 182명의 대상자에게 연간 354,894천원을 지원하였다.

3)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지급

중증장애인(1급, 2급)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매월 3만원의 생계보조수당 추가 지급하여 월평균 1,131명의 대상자에게 연간 415,240천원을 지원하였다.

4) 장애인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장애인 진료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에 대하여 연간 5,553명의 대상자에게 총 170,087천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도모하였다.

5)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저소득 1~3급 장애인 중·고등학생과 1~3급 장애인의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에 대하여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전액, 교과서대 109천원 (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3천원(연1회), 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5천원을 분기별 총 21명의 대상자에게 10,266천원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였다.

6)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신규 등록 장애인 51명에게 장애인 등록진단비(지적 및 자폐성 장애 : 40천원, 기타장애 : 15천원) 총 880천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였다.

7)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유형에 따라 욕창방지용 매트, 음향신호기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워커, 진동시계 등의 장애인재활보조기구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146개에 대해 11,378천원을 교부하였다.

나. 2010년 사업계획

1) 장애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장애인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장애인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3)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저소득 1~3급 장애인 중·고등학생과 1~3급 장애인의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에 대하여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전액, 교과서대 112.3천원 (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4천원(연1회), 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6.6천원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

4)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신규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록진단비(지적 및 자폐성장애 : 40천원, 기타장애 : 15천원) 총 1,080천원을 지원하여 등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5)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80여 명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한 재활보조기구(욕창방지용 매트, 음향 신호기리모콘, 음성탁상시계, 휴대용 무선신호기, 보행보조차, 진동시계, 자세보조용구, 식 사보조기구 등)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 할 것이다.

3. 장애인 복지시설 등 운영 지원**가. 2009년 추진실적****1)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 990,800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6개 사업 63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378,296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

요양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도심 인근에 거주홈 개념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인권확보와 각종 질병으로 부터의 보호, 생활여건 개선 등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9년 8월에 입소정원 30명 규모로 개설하여 179,302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에 191,223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주간동안 보호하여, 장애인의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영위하도록 하여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시켰다.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154,422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훈련 및 일거리를 제공하고 자활자립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5)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에 107,543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일반기업에 취업이 곤란하고 판매활동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이 취업 중인 직업재활시설 및 재가 장애인들의 생산품을 전시·판매함으로써 생산시설의 판로개척은 물론 자립기반을 조성하였다.

6)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재가복지센터에 88,000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소외계층 및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재가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통한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였다.

7)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4개소에 152,674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8)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568,543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였다.

9)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에 202,156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도모하였다.

10)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에 94,760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 지원, 인권·교육 지원, 생활·문화지원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 및 연계망 구축, 결연·후원

추진을 도모하였다.

11)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94,760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고충상담, 도우미파견 및 지적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였다.

12)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장려수당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낮은 보수로 인한 사기저하에 따라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14개소 108명에게 203,868천원의 종사자 장려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였다.

13)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제공하고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2개소 4개 사업에 135,432천원의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였으며 1,153,606천원의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을 신설하고 이로써 중증장애인의 부양으로 가정해체 위기에 처하는 저소득 가정을 돕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나. 2010년 사업계획

1)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15개 장애인 복지시설에 3,555,726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재활 및 적응훈련을 돕고 가족구성원의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 할 것이다.

2)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개소 8개 사업에 120,080천원의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노후차량교체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 입욕리프트를 지원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과 이용시설 서비스 이용 장애인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제공하고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개척에 기여 할 것이다.

3) 중증장애인 무료치과진료사업 시행

101,000천원의 장비보강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치과 진료가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인천치과의사협회와 연계하여 무료로 간단한 구강질환 치료를 실시하여 중증장애인의 건강한 치아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4.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및 활동지원

가. 2009년 추진실적

1)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꾀하고자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와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을 실시하였다. 만 18세 이상 관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는 16명을 배치하였으며 장애인일자리사업(장애인전용주차구역단속보조원)에는 10명을 배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근로가능 장애인을 위한 경제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마련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할 것이다.

2)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추진

구 분	기 간	인 원	사 업 내 용	비고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2009.2월 ~ 2010.1월	307명	- 언어, 미술, 음악, 인지치료 - 장애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3)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

구분(주관)	기 간	인 원	사 업 내 용	비고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보건복지가족부)	2009.2월 ~ 2010.1월	339명	신변처리, 가사활동, 일상생활, 이동보조, 동료상담 등 활동보조지원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인천시)	2009.1월 ~ 12월	35명	보건복지가족부 지원 활동보조지원사업 부족분 추가 지원	

4)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로 외부활동이 제한적인 저소득 재가 장애인과 가족 120여명에게 3회 3,915천원의 사업비로 나들이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 및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일반인의 자원봉사 참여로 장애인과의 상호일체감과 유대관계 형성을 도모하였다.

5)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보급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로 인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1~3급 장애인가구 1,658세대에 월 2회 장애인재활정보신문을 보급함으로써, 각종 복지시책 정보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나. 2010년 사업계획

1)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관내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행정도우미 및 장애인복지일자리(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보조원) 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및 소득보장으로 생활안정을 꾀하고자 한다. 또한 복지행정 업무 보조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을 통해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장애인의 주차구역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2)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추진

구 분	기 간	대 상	지 원	비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 업	2010.2월 ~ 2011.1월	-만18세미만의 뇌병변, 지적, 언어, 청각, 자폐성, 시각 장애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수급자 : 22만원 -차상위 : 20만원 -전국가구평균 50%이하:18만원 -전국가구평균 100%이하:16만원	

3)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

구 분	기 간	대 상	지원시간	비고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보건복지가족부)	연중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1급 장애인	월 40~180시간 범위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인천시)	연중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1급 장애인중 <u>시 선정통보자</u>	월 10~80시간 범위내	

4)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로 외부활동이 제한적인 저소득 재가장애인과 가족에게 연 4회(분기별) 나들이 기회 제공으로 정서적 안정 및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일반인의 자원봉사 참여로 장애인과 상호일체감 및 유대관계 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5) 저소득 장애인 생활신문보급

중증장애로 인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3급 장애인 가구 1,930세대에 재활정보 전문 신문을 월 1회 보급함으로써, 각종 복지시책 정보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5. 장애인 편의증진

가. 2009년 추진실적

1) 장애인 편의수단 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편의수단 제공계획에 의거 공공청사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 및 구입하여 비치하였다. 점자업무 안내책자, 공중모사전송기 (FAX), 보청기기, 휠체어, 영상전화기를 비치하였으며 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공공청사 이용에 있어 편의증진을 도모하였다.

2)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 강화

2008년 시행된 편의시설실태 전수조사에 따른 시정조치 통보로 공공기관의 예산확보 및 시정조치 계획 수립을 도모하여 단계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율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나. 2010년 사업계획

1) 장애인 편의수단 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확대경(8배율 이상) 구입 및 설치하여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 점자자료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의 행정복지의 수혜기회를 증진하고자 한다.

2)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 강화

편의시설 5개년 계획 및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설치 강화계획 수립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을 시행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장애인의 공공기관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